

해당 자료는 시행지침의 발췌본이므로 자세한 사항은

「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(파주시)」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해당 시·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(경영주 및 경영주의 농어민)
- 지원금액 : 농어민 개인에게 월 5~15만원을 시·군 지역화폐로 지급
- 지원절차 : (신청접수) → (서류심사) → (현장심사) → (총괄심사) → (지급결정)
 - (신청접수) 지원기준 등을 숙지한 농어민이 시·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등 포함)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
 - ※ 접수시기(2차) : 상반기(3~4월), 하반기(9~10월)
 - (서류심사) 시·군(구·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등)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확인·심사
 - (현장심사) 현장심사위원회(구·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등)에서 농수산물 생산(농작물 재배업, 축산업, 수산업, 임업)에 실제 종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(서류심사)를 실시
 - (총괄심사) 총괄심사위원회(시군위원회)에서 지급기준(거주·영농(어)·연령·소득·중복·부정 등) 충족여부에 대하여 총괄심사(필요시 현장조사 실시)
 - (지급 결정) 총괄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·지급

2. 지급요건(기준) 및 금액

- 지급요건 : 주민등록상 경기도 해당 시·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어민(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은 포함하고 법인은 제외)
 - 지급대상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50세 미만의 농어민(단, 40~50세 미만은 농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)
 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·귀어한지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농어민
 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
 - 「동물보호법」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「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

에서 종사하는 농민

- 「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
-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농어민
- 거주기간 : 해당 시·군에서 연속 1년(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) 이상 거주
다만,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아니함
- 영농영어기간 : 해당 시·군에서 연속 1년(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) 이상 농수산물 (농작물 재배업, 축산업, 임업, 어업)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
다만,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아니함

※ 해당 시군과 연결된 경기도 내 시군은 해당 시군에 포함(해당 시군과 연결된 다른 시·도의 시군은 경기도 내로 봄)

- 소득기준 : 농외소득(농어업외소득) 3,700만원 미만(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)인 자.

※ 2026년 농어민기회소득 1차 지급자는 전년(2024년도) 귀속 확정액으로 하며, 농외소득초과로 농어민기회소득 1차 지급을 받지 못한 신청자 및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자는 전년(2025년도 귀속) 확정액으로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

-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
 - (청년농어민, 귀농어민) 자원봉사, 마을공동체활동(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), 농어민 교육 참여 1회 이상 등
 - (환경농어민) 친환경, 동물복지축산농장, 가축행복농장,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
- 지급연령 : 만 19세 이상(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)

제외대상자 ①사업체(법인 등)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(고용근로)하는 임직원 ②농수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·출하·가공·수출·유통·판매 등의 농어업 활동만 하는 자 ③의무군복무자·초중고생·장기입원자 등 영농(어)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.(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를 포함하되, 전문의가 발급한 '활동 가능 진단서'를 제출한 경우 및 현장조사 결과 영농·영어 활동이 가능한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) ④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

□ 지급금액

- 월 15만원(연 180만원 이내)
 - 50세 미만의 농어민(단, 40~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)

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·귀어한지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농어민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 생산하는 농어민
- 「동물보호법」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「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
- 「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 생산하는 어민

○ 월 5만원(연 60만원 이내)

-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농어민
- ※ 지원금액은 시군 자체결정에 따라 청년, 환경, 귀농어민도 일반농어민과 동일한 금액(월 5만원 / 연 60만원 이내) 지원가능

3. 지급대상에 대한 확인절차

① **농어민 및 영농·영어요건 확인** : 농어업 경영체 등록사항(농어업경영체 등록증 및 등록확인서) 확인 하되,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등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면 제외

- ① 농업경영체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등록확인서 확인
- ② 임업경영체 : 산림청장이 발급한 등록확인서 확인
- ③ 어업경영체 :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등록확인서 확인

※ 영농·영어기준 : 현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시·군에서 연속 1년(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) 이상 농수산물(농작물 재배업, 축산업, 임업, 어업)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

※ 단, 경영체 등록자 중 영농·영어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전년도 농어민기회소득 수령자는 해당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에서 영농·영어기간을 인정 받은 경우 지급 가능

- 지급 대상의 확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민으로 하며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(총괄심사위원회) 판단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
[현장심사위원회에서는 실제 영농·영어 활동 여부를 집중 확인]
- 필요시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

< 유의사항 >

-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,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시·군에서 친절히 안내하며, 불합리한 제도는 공문으로 경기도에 개선 의뢰 요청
-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어민에게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라 농업(임업)·어업경영체 등록*을 안내
 - *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공익형 직불제 지원, 농업용 면세유 배정,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감면, 정부 및 지자체에서 농어업과 관련된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고 대부분의 농축수협에서 조합원 가입시에 요구하는 자료임을 안내
 - 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배부한 농업경영체등록 제도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등록 기준·절차 시기 및 해당 시군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등 안내
 - * 경영주외 농어업인은 「국민연금법」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의 직장가입자 등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(해당 기관에 문의 안내)
-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(현장심사 및 총괄심사)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확인 가능
-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시장·군수로 기타 필요사항을 결정하여 추진

② 지급대상별 확인 :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, 영농(어), 소득, 사회적가치 창출, 연령, 귀농·귀어 기간, 환경농어민 해당 인증 등 충족 여부 확인

① 청년농어민 : 경영체 등록확인 → 연령조건확인 → 거주영농(어)·소득조건 확인 →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확인

연령(2026년 사업기준)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0세 미만 ~ - 1986. 1. 1. 이후 출생자 *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제외 (단,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거주, 영농(어), 소득기준 등 충족시 지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0세 이상 ~ 50세 미만 - 1976. 1. 1. ~ 1985. 12. 31. 출생자 - 2016. 1. 1. 이후 경영체 등록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* 및 거주, 영농(어), 소득기준 등 충족시 지급 ※ 단,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중도 말소 시 영농·영어 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

② **귀농·귀어민** : 경영체 등록확인 → 귀농·귀어조건확인 → 소득조건 확인 →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확인

- 귀농·귀어 5년 이내 :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(귀농·귀어인은 최초 전입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지급 가능)
- 농어촌에 이주 후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나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 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된 기간이 2년 이내(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)
- 만 65세 이하인 자(1960.1.1.이후 출생자. 단, 2025년에 귀농·귀어민으로 지급받은 자는 귀농·귀어한 날부터 5년까지 지급 가능)

전입일, 경영체 등록.나이(2026년 사업기준)	비 고
○ 전입 기준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	전입일과 경영체 등록 및 나이 기준이 모두 충족 시 지급
○ 경영체 등록 : 농어촌 이주 후 등록하거나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등록기간이 2년 이내 (2년 초과인 경우 제외)인 자	
○ 만 65세 이하인 자(1960.1.1.이후 출생자)	

※ 귀농어민의 경우, 농어촌으로 귀농어 후 다시 도시로 이농하였다가 또 다시 농어촌으로 귀농어한 경우 등에는 **경영체 등록확인**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.

③ **환경농어민** : 경영체 등록확인 → 환경농어민 인증서 확인 → 거주.영농(어).소득조건 확인

- 친환경,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, 명품수산물의 사업기간 동안 유효한 인증서

④ **일반농어민** : 경영체 등록확인 → 거주.영농(어).소득조건 확인

③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 확인

- ① 거주요건 : 주민등록등·초본자료 및 실거주 확인
- ② 소득요건 : 별첨 3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농외소득 조회·확인 방법 참조

④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확인

- ① **청년농어민 및 귀농·귀어민** : 자원봉사, 마을공동체활동(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), 농어업교육 참여 등 증빙자료 ※ 연 1회 이상
- ② **환경농어민** : 사업기간 내 유효한 인증서
 - 친환경농업인(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 인증서)
 - 축산농업인(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인증서)
 - 어업인(유기수산물, 무항생제수산물,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, 명품수산물 인증서)